

# 2017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98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6. 11. 7.
4. 회부일자 : 2016. 11. 8.

### II . 제안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7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임.

### III .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IV. 주요내용

### 1.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

-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 학교폭력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 2.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

#### ○ 총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계	보조금	공제료 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사업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비)	예치금
17,799,658	1,857,286	5,672,590	9,953,547	146,235	170,000	17,799,658	6,289,040	929,469	395,807	10,185,342

※ 보조금: 공제급여 지원금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

※ 기타수입: 수익사업(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 운영 수익금 +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구상금

※ 고유목적사업비: 공제사업비 + 예방사업비 + 학교폭력피해지원비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

#### ○ 수입계획은 17,799,658천원으로

- 공제급여 지원금 1,672,000천원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7,706천원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 167,580천원
- 공제료수입 5,672,590천원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9,953,547천원
- 이자수입 146,235천원
- 수익사업 전입금 120,00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0,000천원임

○ 지출계획은 17,799,658천원으로

- 공제사업비 5,793,200천원
- 예방사업비 207,80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천원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67,580천원
- 인건비 929,469천원
- 운영비 395,807천원
- 차년도 예치금(차기 이월금)은 10,185,342천원임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16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498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기금 개관

-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난 1987년 서울특별시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비롯해 17개 시·도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07년 9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마련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에 근거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1]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비교**

구 분	법률시행 이전	법률시행 이후
학교안전 공제회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초·중·고, 평생교육시설</li> <li>■ 외국인학교(가입대상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및 초·중·고, 평생교육시설(의무가입)</li> <li>■ 외국인학교(임의가입)</li> </ul>
급여지급범위확대 및 급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별로 상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인접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로 보상범위 확대</li> <li>■ 보상기준 전국 통일화</li> </ul>
가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li> </ul>
급여종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li> <li>■ 교직원 등이 비용 지출한 경우 이를 보전</li> </ul>
보상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급여 지급대상 제외</li> <li>■ 등·하교시간 중 사고</li> <li>■ 위탁급식에 의한 사고</li> <li>■ 가해자가 있는 사고</li> <li>■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li> <li>■ 자해·자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급여 지급대상</li> <li>■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li> <li>■ 급식관련사고</li> <li>■ 학교폭력사고(국민건강보험법의 범위)</li> <li>■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li> <li>■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인 자해·자살사고 등 포함</li> </ul>
법인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정법률에 의한 특수법인</li> </ul>
사고발생 통지의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별로 상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발생 시 지체 없이 통지(의무사항)</li> </ul>

○ 현재의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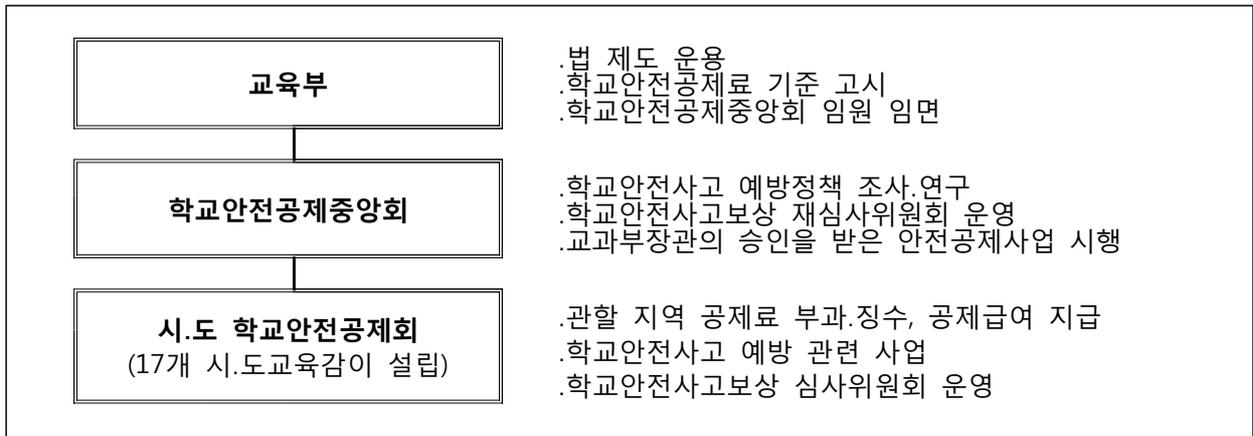
○ 또한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주로 학교 안전사고 보상관련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시·도 및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을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① 과실상계(過失相計)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過失)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임.

② 과실책임(果實責任)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주의

**[표-2] 학교안전사고 보상 관련 역할 체계**



**[표-3] 기금 조성 규모**

(단위 : 천원, %)

2016년도말 조성액(a)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	
	수입(b)	지출(c)	증감 d=b-c		증감액 (e-a)	증감률
9,953,547	7,846,111	7,614,316	231,795	10,185,342	231,795	2.3%

○ 2017년도말 현재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101억 85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 99억 53백만원에 2017년도중 수입액 78억 46백만원과 지출액 76억 14백만원의 차액 23백만원을 가산한 것입니다.

**[표-4]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주요항목	2017년도 예산안(A)	2016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 (A-B)	비율
전년도 이월금	소 계	9,953,547	9,643,547	310,000	3.2%
	사고예방기금	9,953,547	9,643,547	310,000	3.2%
수입	소 계	7,846,111	6,068,092	1,778,019	29.3%
	공제료수입	5,672,590	5,692,113	△ 19,523	△ 0.3%
	이자수입	146,235	139,630	6,605	4.7%
	소방수익	120,000	120,000	-	-
	지 원 금	1,857,286	72,349	1,784,937	2,467.1%
	학교폭력구상금회수	50,000	44,000	6,000	13.6%

(단위 : 천원)

구분	주요항목	2017년도 예산안(A)	2016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 (A-B)	비율
지출	소 계	7,614,316	9,382,454	△ 1,744,138	△ 18.6%
	사업비 (공제사업비, 예방사업비)	6,001,000	8,018,649	△ 2,017,649	△ 25.2%
	사업비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67,580	-	167,580	-
	사업비(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	108,960	11,500	10.6%
	기관운영비	1,325,276	1,230,845	94,431	7.7%

## 나. 수입계획

-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액은 공제급여 지원금 16억 72백만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8백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 1억 67백만원, 공제료수입 56억 72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99억 53백만원, 이자수입 1억 46백만원,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천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0억 88백만원(13.3%) 증가한 177억 99백만원 규모입니다.
- 기금 수입액의 주된 증가요인은 공제급여 지원금,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 등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의 지원금이 전년 대비(12백만원) 18억 45백만원(149.4배)<sup>2)</sup> 증가했기 때문이며 그 중 대부분을 공제급여 지원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최근 3년간 기금조성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55억 43백

2) 수입계획 중 지원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소계	1,857,286	72,349	1,784,937	2,467.1%
지원금	서울시교육청	1,857,286	1,844,937	14,940.0%
	농협지원금		60,000	△ 60,000

만원, 2015년 61억 23백만원, 2016년 60억 67백만원으로 3년간 기금조성 총액은 177억 33백만원이며, 이는 연평균 59억 11백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공제기금 지출액은 총 234억 45백만원으로 연평균 78억 15백만원에 달해 기금 조성액 대비 공제기금 지출액 수지는 연평균 19억 4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는 같은 기간 공제기금 수입증대를 위해 학생 1인당 공제료를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sup>3)</sup>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현 추세대로라면 기금 고갈의 위험성이 큰 실정입니다.

-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의 적자 발생사유를 보면 실질적인 공제사업보다 인건비 등 과도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로 적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 바, 경상비 지출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2015년도의 경우 공제료 수입 대비 공제급여 지급의 수지 상황만을 살펴보면 공제료 수입은 54억 45백만원인데 비해 공제·예방 및 상담지원비와 학교폭력지원비로 집행된 지출액은 50억 18백만원으로 연 4억 27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같은 해 총 기금조성액 대비 집행액 수지를 살펴보면 1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질적인 공제사업보다 인건비 등 과도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sup>4)</sup>

3)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학생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분	유	초	중	고
<b>2017</b>	<b>1,940</b>	<b>3,370</b>	<b>6,840</b>	<b>8,510</b>
2016	1,940	3,160	6,360	8,020
2015	1,860	2,940	5,920	7,210

4) 2015년도 공제기금 집행액은 61억 24백만원인데 비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11억 6백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에서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달하고 있음.

○ 또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기금 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소방사업 이익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바, 그 규모도 2016년도 기준으로 1억 20백원에 불과하여 전체 조성액의 약 2%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경상비 감소와 자체수입증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공제급여 지원금’ 16억 72백만원과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1억 68백만원 등 총 18억 45백만원을 순증하였는 바,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적자 해소를 학교안전공제회의 자체 노력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재원으로만 해소하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수익 증대방안과 경상적 경비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sup>5)</sup>

**[표-5] 최근 3년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보조금	공제료 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 수 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공제 예방 및 상담 지원비	학교 폭력 지원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 상환	금 리 상 환	수 금 상 환		기 타 지 출
2014	5,543			4,744	53		626	120	7,963	6,624	92	1,247					-2,420
2015	6,123	60	175	5,445	62		261	120	6,124	4,930	88	1,106					-1
2016	6,067	60	12	5,692			139	164	9,382	8,019	109	1,255					-3,315
계	17,733	120	187	15,881	115	0	1,026	404	23,469	19,573	289	3,608	0	0	0	0	-5,736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다. 지출계획

-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지출액은 공제사업비 60억 1백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1억 68백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비 1억 2천만원, 기관운영비 13억 25백만원으로 2016년 대비 17억 68백만원(△18.8%) 감소한 76억 1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6] 지출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주요항목		2017년도	2016년도	증 감	
		예산안(A)	본예산(B)	증감액(A-B)	비율
공제사업비	공제급여	5,617,000	7,620,349	△ 2,003,349	△ 26.3%
	소송 및 의료자문료	145,800	145,800	-	-
	보상심사위원회	30,400	24,000	6,400	26.7%
예방사업비	예방사업비	207,800	228,500	△ 20,700	△ 9.1%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67,580	-	167,580	-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	108,960	11,500	10.6%
기관운영비	인건비	929,469	813,541	115,928	14.2%
	업무추진비	30,000	30,000	-	-
	일반운영비	365,807	411,304	△ 45,497	△ 11.1%
소계		7,614,316	9,358,454	△ 1,744,138	△ 18.6%

- 지출액의 주된 감소 요인으로는 공제사업비 중 공제급여를 전년도 대비 20억 3백만원(26.3%) 감액 편성하고, 예방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21백만원(9.1%)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액의 감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중 급여는 전년도보다 1억 1천만원(16.2%), 수당의 경우 6백만원(4.6%)이 증액되어 총 인건비의 경우 전년도 보다 1억 16백만원(14.25%)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3.3% 인상과 승진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퇴직연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는 각종 사업비를 줄인 반면 경상경비인 인건비는 증액시키고 있는 바 적자상태에 있는 기금의 적자폭 개선을 위

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줄이고 인건비만 증액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7] 인건비 세부내역**

(단위 :천원)

주요항목			2017년도	2016년도	증 감	
			예산안(A)	본예산(B)	증감액(A-B)	비율
기관운영비	인건비	급여	789,733	679,891	109,842	16.2%
		수당	139,736	133,650	6,086	4.6%
소계			929,469	813,541	115,928	14.3%

○ 한편 동 기금지출계획에서는 먼저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비로 지급하는 공제급여를 76억 20백만원에서 56억 17백만원으로 감액하고 있는 바, 이는 학생 수 감소와 공제급여의 지급률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예방을 위한 예방사업은 장기적으로는 공제급여의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6]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기준 : 2016.9.)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	외국인	기타	계	전년대비 증감율	
2012	건수	640	3,780	3,632	2,850	67	32	10	18	11,029	-
	금액	59,232	1,159,762	1,750,903	1,406,222	45,959	14,344	857	3,926	4,441,205	-
2013	건수	725	3,774	3,865	2,917	65	35	14	32	11,427	3.6%
	금액	67,035	1,077,019	2,352,165	2,426,103	26,281	134,274	7,998	13,471	6,104,346	37.4%
2014	건수	1,026	4,347	4,506	3,437	124	25	16	20	13,501	18.1%
	금액	100,143	1,683,590	1,917,063	2,841,416	37,738	29,853	8,506	6,135	6,624,444	8.5%
2015	건수	1,080	4,305	4,339	3,577	95	27	8	27	13,458	△0.3%
	금액	99,278	945,155	1,871,357	1,751,840	23,375	11,672	1,234	8,830	4,712,741	△28.9%
2016	건수	709	2,969	2,806	2,465	49	13	7	15	9,033	-
	금액	64,486	788,534	1,043,542	1,159,979	10,305	4,258	998	8,174	3,080,276	-

□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4.] [법률 제13947호, 2016.2.3., 일부개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공제회의 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 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제5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04호, 2015.7.20., 일부개정]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4.20.]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타법개정]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시행 2009.10.21.] [법률 제9803호, 2009.10.21., 일부개정]

제3조 (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

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 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애(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애배상(障害賠償)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④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애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